

영국사례 1

언론사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부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천강령 위반이다.

- 신청인 : Clare Balding
- 인용된 조항 : 제12조(차별금지)
- 언론사 : The Sunday Times

신청내용

Miss Clare Balding은 2010년 7월 25일 「Sunday Times」 문화면에 게재된 기사가 PCC의 윤리강령 제 12조(차별금지)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Britain by Bike’에 대한 것으로, 신청인을 “Dyke on a bike”(자전거를 탄 레즈비언)이라고 묘사했다. 신청인은 이러한 묘사는 이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경멸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문이 신청인은 ‘덩치 큰 레즈비언’ 처럼 생겼다고 조롱하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게재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한 칼럼니스트 AA Gill은 신랄하고 저급한 유머로 그동안 명성을 쌓아온 사람으로 공인에 대한 풍자를 즐기는 영국 특유의 유머를 추구하고 있는 것뿐이며, Gill의 기사에 대해 지난 5년간 PCC에 신청된 건수는 62회에 달하지만 표현의 자유 범위에 인정되어 한 번도 신청이 인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성애가 더 이상 남들로부터 감춰야하는 불명예가 아닌 시대인데다, 신청인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천명하였으므로 성적 정체성에 대해 기사화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Dyke on a Bike’라는 이름의 미국과 영국의 사이클 단체에서는 ‘Dyke’라는 명칭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이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방어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며, 언론사의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결정이유

PCC는 그동안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칼럼니스트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신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PCC는 이전의 칼럼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윤리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실천강령 12조는 언론사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부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PCC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강령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PCC는 기사가 'Dyke' 라는 용어를 풍자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

없이 이 용어는 신청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라 판단한다. 문장의 맥락을 따져보더라도 해당 용어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신청인의 성적 정체성을 불필요하게 비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며, 언론사가 애초에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영국사례 2**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한 보도 당사자의 반박의견을 원보도와 함께 게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 : Mr Edward Clark
- 인용된 조항 : 제1조(정확성)
- 언론사 : Whitstable Times

**신청내용**

Mr Edward Clark은 2010년 4월 30일 「Whitstable Times」가 출판한 “약물중독 의혹 논란 커져” 제하의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다며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지역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신청인이 예전에 헤로인을 상용했었다는 익명의 이메일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신청인은 헤로인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취재 당시 언론사에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으며, 반박 의견은 기사에 함께 게재되었다. 신청인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제보만 믿고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해당 기사의 보도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익명의 메일이 신청인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과 오페라단 단장을 접촉해 취재를 시작했고, 신청인의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의 항의 이후 언론사는 온라인 기사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어머니와 오페라단장의 반박 기고문을 실었으며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결정이유**

PCC는 언론사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취재를 시작하여 이를 기사화하기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윤리강령 제1조 취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신청인이 헤로인을 상용했다는 중대

한 사안을 보도하였다. 신청인의 반박 의견이 기사에 언급되기는 했으나 이외에 별도로 언론사가 해당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PCC는 이것이 엄연한 언론사의 실책이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신청인의 반론을 실었다는 것만으로 신문사가 해당 의혹의 사

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언론사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추후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부정확한 기사의 게재로 인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신청은 인용되었다.

호주 사례 1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과 그 설명이 기사의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평결번호 : No. 1468

APC는 2010년 3월 16일 「The West Australian」이 원주민보호관리국의 Roebourne 마을 환경조사 결과를 1면 기사로 실으면서 함께 사용한 사진과 설명에 대해 제기된 신청 사건을 다루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한 원주민 남성이 부역에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불결한 환경- Roebourne에서 ‘the village’ 라고 알려진 지역의 한 남성이 더러운 부역에서 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라고 그는 말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음날 신문사는 해당 이슈에 대해 독자들이 보내온 60여 개에 달하는 의견 중 16개를 선정하여 보도하였는데, 각 의견에는 문제된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다. 독자의견의 대부분은 본인의 부역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남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3월 16일자 기사를 쓴 기자는 뒤이은 사설에서 독자들의 항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불행히도 문제의 사진이 독자의 동정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독자들의 분노가 원주민들이 임대 주택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데 쏠리게 됨으

로써 기사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주민 출신인 Ted Wilkes 교수와 서호주 자살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인 Rob Donovan 교수는 해당 보도에 대해 APC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의 사진과 설명이 사진 속 남성에 대한 개인적 모독이면서 동시에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사가 사진 속 남성을 비판하는 독자들의 의견을 다수 보도하여 이러한 불공정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과 설명이 해당 원주민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으로서 기사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해당 원주민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며, 부역의 불결함을 통해 원주민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즉 Roebourne 사람들이 생활하는 불결한 환경은 인구과잉과 알콜, 약물중독 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진을 실음으로써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독자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독자들의 의견 표현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언론사는 후속보도로 동정적인 독자 의견과 Roe-

bourne의 상황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사실을 내보냈음을 강조하면서, 3월 16일 기사 이후 원주민보호국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는 등, 사진 속 남성과 마을 원주민들은 기사로 인해 마을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C는 해당 기사가 Roebourne 마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작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진과 설

명으로 인해 기사의 주된 취지가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원주민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되었다. 또 사진 속 원주민을 비판하는 독자의 의견을 다수 실음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었다.

APC는 신문사가 공익적 취지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나, 취지의 왜곡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신청은 인용한다.

## 호주 사례 2

**심각한 수준의 의혹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보도하고 관련 당사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평결번호 : No. 1470

APC는 2010년 2월 13일 「News-Mail」이 게재한 기사에 대해 신청인 Helen Orpin이 불만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었다. 언론사는 ‘지독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현관문 앞에서 서 있는 사진을 내보내고, 2면의 관련 기사에도 신청인이 앞마당의 거리 표지판 옆에 서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웃 간에 일어난 분쟁에 대한 것으로, 개인 소유지에서 Orpin 가족을 쫓아내달라는 취지로 주민 20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신청인은 이 기사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사진은 기사가 방문하여 현관에 나왔을 때 찍힌 것으로, 여러 차례 찍지 말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보도와 관련해서도 익명 처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자신의 성명 또는 초상의 사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지역사회에서 일

어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들을 공개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신청인이 익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설사 당사자가 초상 공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주민과 경찰, 신청인에게 집을 임대해준 부동산을 모두 취재하였으므로 사실보도를 위한 충분한 취재를 하였고, 신청인의 입장을 실을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고 밝혔다.

APC는 지역신문이 이웃을 괴롭히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하고, 심각한 수준의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헤드라인과 기사를 통해 보도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신청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및 보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뉴질랜드 사례

언론의 보도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그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정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

## 사건번호 : 2127 LEE AGAINST THE PRESS

Christchurch 지역에 사는 한국인 이 모 씨는 5월경 Christchurch에서 한국인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사망한 두 여자 어린이와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은 한국사회에서는 사망자의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망한 남성이 생전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5일 한국인 조 모 씨가 자녀 2명과 함께 뉴질랜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한국에 있었던 조 씨의 남편 백 씨는 5월 7일 금요일 자택에도 착했고, 장례식은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거행되기 몇 시간 전, 백 씨 또한 쇼핑센터 앞에 세워둔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백 씨의 장례식은 화요일에 있었다. 그날 저녁 신청인은 언론사의 온라인판 편집자에게 사망한 가족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진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다음날 지면에도 실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항의 메일을 보낸 후 언론사에서 답변이 없자 신청인은 PC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편집자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신청인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당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망자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문화적 차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언론사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자의 사진을 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사망자 백 씨가 생전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백 씨의 요청이 웹사이트와 지면을 통해 알려졌고, 이전 기사에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실렸다는 것이다.

## 언론사의 답변

「The Press」의 Andrew Holden 편집장은 지난 5월 5일 3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한인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한인 사회 대변인인 Kevin Park과 거의 매일 접촉했었다고 밝혔다. Holden 편집장은 “백 씨에게도 밝혔듯이, 한국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므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지역사회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우리 언론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Kevin Park와의 논의 끝에 친지들이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진을 온라인에서 내리기로 하고, 친지들이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더 적합한 사진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이 제공되지 않았고, ‘사건의 뉴스가치’ 때문에 원래의 사진을 다시 게재했다.

언론사는 자녀들의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자

택에 걸어놓은 사진을 사용한 것이며 Kevin Park도 자녀들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백 씨가 공항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 신청인의 반론

신청인은 Kevin Park이 언론사 측에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잘 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인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충의를 모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없으나 신문사가 그 사진에 대해 ‘보도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해당 기사에 사진이 꼭 게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가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의 사진이 자택에 걸린 영정사진이었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친지, 친구들이 명복을 비는 것과, 제3자인 언론사가 기사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 결정내용

PC는 Christchurch의 한인사회가 사진 게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특정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터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신청인은 한국 사회에서는 죽은 이의 사진이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친지들에게는 공개될 수 있지만 ‘제3자인 언론사’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금기시된다고 주장했다.

PC의 기본 원칙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주위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 특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망자의 친지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충분히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PC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사진을 영구히 삭제하여야 하는지, 보도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도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언론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며, 죽은 가족의 사진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언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언론사는 죽은 이들의 친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신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